

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. 6. 28 선고 2018가단118532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
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

법정대리인(후견인) 사단법인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억

피고1. C

2. D

3. E

피고들 소송대리인 F

변론 종결2019. 6. 14.

판결 선고2019. 6. 28.

주 문

1. 원고에게,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,

가. 피고 C은 3/14 지분에 관하여,

나. 피고 D, E은 각 2/14 지분에 관하여

각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6. 10. 18. 접수 제1443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
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의 치매 발생과 성년 후견 개시 심판 과정

- 1) 원고는 2014. 3. 28. G병원에서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은 후 그에 대한 약물치료를 시작하였고, 안양시는 2014. 4. 3. 치매상담센터에 원고를 치매환자로 등록하였다.
- 2) 원고는 2015. 4. 29. G병원에서 '중등도의 인지 기능저하 소견 및 우울감, 무기력증 등의 이상정신행동증이 동반된 상태, 장소에 대한 지남력, 언어능력에 저하를 보이고, 시간에 대한 지남력, 주의집중능력과 계산력, 기억회상, 시공간 구성능력에 장애를 보인다'는 판단을 받았다.
- 3) 원고의 며느리인 H과 손녀 I은 2016. 7. 21.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51328호(이하 '성년후견 사건'이라 한다)로 원고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를 하였다.
- 4) 국립정신건강센터 J은 위 성년후견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정신감정을 한 후, 2016. 11. 5. '원고는 말기 치매 환자로 일상적인 사무와 독립적인 생활을 해나가는데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.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이다'라는 내용의 후견감정서(이하 '이 사건 후견감정서'라 한다)를 작성하였다.
- 5) 원고는 2017. 2. 15. 위 성년후견 사건에서 '원고가 현재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었다'는 이유로 성년후견을 개시하는 심판을 받았다.

나. 신분관계 및 등기관계

- 1) 원고는 피고들의 외할머니이고, 원고의 딸이자 피고들의 어머니인 F과 함께 살고 있다.
- 2)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6. 10. 18. 접수 제144345호로, 원고의 소유이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3/14 지분에 관하여 2016. 10. 3.자 증여(이하 '이 사건 각 증여계약'이라 한다)를

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,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2/14 지분에 관하여 같은 일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D, E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'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'라 한다)가 각 경료되었다.

[인정근거] 갑 제1 내지 11호증, 을 제2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와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

가. 원고와 피고들의 주장

원고는,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원고의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므로, 이에 터잡은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는 반면, 피고들은,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원고의 의사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유효하므로, 이에 터잡은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한다.

나. 판단

1)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바,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고 보아야 하고,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(대법원 2002. 10. 11. 선고 2001다10113 판결 등 참조).

2) 그러므로 보건대,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, 원고가 2014. 3. 28. G병원에서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은 후 그에 대한 약물치료를 시작하였으나, 그 증세가 점점 악화된 사실, 이에 위 H과 I이 2016. 7. 21. 원고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를 한 사실, 그런데,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2016. 10. 3.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6. 10. 18. 경료된 사실, 한편 위 J이 2016. 11. 5. 위에서 본바와 같은 내용의 후견감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, 위 증여계약 일자가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일 이후이자 위 J의 이 사건 후견감정서 작성일 이전인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, 원고는 위 증여계약 일자에 '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이 결여된 의사무능력 상태'에 있었다고

판단된다.

3) 따라서,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원고의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므로, 이에 터잡은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, 이에 반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다. 소결론

따라서,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해당 소유권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, 이를 전부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이현우

별지